

행 정 자 치 부

시 정 요 구

제 목 6급이하 기술직렬 승진후보자 명부 통합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부산광역시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우수 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승진 예정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의결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1. 2016년 제0회 상반기 ○○직렬(○○분야) 5급으로의 승진 업무 관련

부산광역시에서는 ‘2016년도 제0회 상반기 5급으로의 심사승진 의결안’에 대해 2016. 1. 13. ○○○○장의 결재(○○○○관-0000) 후, 2016. 1. 14.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직렬 중 ○○분야의 5급으로의 승진 의결 대상 인원을 7명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16. 1. 14. 인사위원회 개최 시 ○○직렬(○○분야) 5급으로의 승진 의결 대상인원으로 예고된 인원이 7명임에도 시 본청 전입 후 근무평정 2회까지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구·군 소속 승진후보자들을 모두 배제시킨 후, ○○○○국 12번 ○○○, ○○○○국 15번 ○○○, ○○○○국 18번 ○○○, ○○○○관실 19번 ○○○, ○○○○국 22번 ○○○, ○○○○본부 25번 ○○○ 등 총 6명을 승진 의결자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리고 ○○직렬(○○분야)에서 6명만을 승진 의결하려고 할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상 23번까지만 승진 심사 범위에 해당됨에 따라 25번인 ○○○는 승진후보자 범위 밖에 있어 승진이 불가함에도 승진 의결되어 2016. 7. 1. 승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2016년 제00회 하반기 ○○직렬(○○분야) 5급 승진 업무 관련

위 관서에서는 ‘2016년도 제00회 하반기 5급으로의 심사승진 의결안’에 대해 2016. 7. 4. ○○○○장의 결재(○○○○관-00000)를 득한 후, 2016. 7. 14.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직렬(○○분야) 5급으로의 승진의결 대상 인원을 4명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16. 7. 14. ○○직렬(○○분야) 5급으로의 승진 의결 대상으로 예고된 인원이 4명임에도 시 본청 전입 후 근무평정 2회까지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구·군 소속 승진후보자들을 모두 배제시킨 후 ○○○○실 12번 ○○○, 14번 ○○○ 등 총 2명을 승진의결자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리고 ○○직렬(○○분야)에서 2명만을 승진 의결하려고 할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상 10번까지만 승진 심사 범위에 해당됨에 따라 ○○○○실 12번 ○○○, 14번 ○○○는 승진후보자 범위 밖에 있어 승진이 불가함에도 승진 의결되어 2017. 1. 1. 승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3. 2017년 제0회 상반기 ○○직렬(○○분야) 5급 승진 업무 관련

위 관서에서는 ‘2017년도 제0회 상반기 5급으로의 심사승진 의결안’에 대해 2017. 1. 3. ○○○○장의 결재(○○○○관-000)를 득한 후, 2017. 1. 12.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직 등 총 14개 직류 85명에 대해 2017. 1. 12. 승진 의결 대상인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17. 1. 12. ○○직렬(○○분야) 5급으로의 승진의결 대상으로 예고된 인원이 4명임에도 시 본청 전입 후 근무평정 2회까지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구·군 승진후보자들을 모두 배제시킨 후 1번 ○○○, 13번 ○○○ 등 총 2명을 승진의결자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러나 ○○직렬(○○분야)에서 2명만을 승진의결하려고 할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상 10번까지만 승진 심사 범위에 해당됨에 따라 13번 ○○○는 승진후보자 범위 밖에 있어 승진이 불가함에도 2017. 1. 12. 승진 의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결국 위 관서에서는 1999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직렬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시·도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위의 1번, 2번, 3번의 지적사항과 같이 5급으로의 승진하려는 임용 배수 범위 내 시 본청 근무자가 없을 경우 당초 의결된 승진 예정 인원을 축소·변경하여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구·군 소속 승진후보자들을 시 본청 전입 후 근무성적평정 2회까지는 시정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모두 배제하는 등 우수인력 확보 및 승진기회 균형 유지를 위한 6급 이하 특수직렬 통합운영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시정] 6급 이하 기술직렬 통합 인사 운영에 있어 부산시의 인사 특성을 감안 하되, 우수 인력 확보와 승진 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한 제도 취지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